#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7년 5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4% 증가(전월대비 0.3% 감소)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22.4%), 금속가공(-9.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20.8%), 전자부품(8.2%)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보합세임(전월대비 0.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3.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2.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7%), 보건·사회복지(9.3%)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 (전월대비 0.3% 감소).
- ◆ 2017년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4.7%) 판매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6.2%), 화장품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전월대비 0.9%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7.9%)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41.0%)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함(전월대비 1.8%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3.7%)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토목(4.4%)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9.6%) 및 기계설치 등 토목 (49.2%)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함.

- ◆ 2017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 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 2017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
- 2017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67(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함(전월 대비 0.1%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오락·문화(-1.0%), 통신 (-0.1%)을 제외한 식료품·비주류음료(4.6%), 음식·숙박(2.3%) 등에서 상승함.
  - 2017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2.8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함(전월대비 0.1% 하락).

####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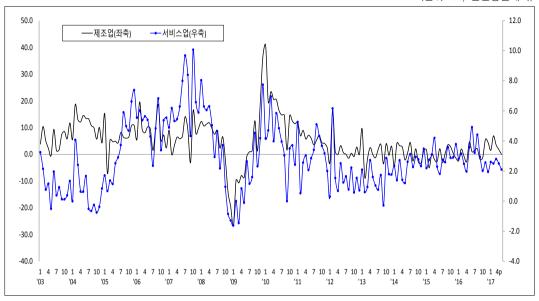
				2014					2015					20	16			2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5월	1/4p	5월 <sup>P</sup>
	광공업 생산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0.2	1.0	0.6	2.8	1.0	4.4	3.7	0.1( 0.2)
	제조업 생산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0.4	1.1	0.7	2.9	1.0	4.6	3.8	0.0(0.2)
생산	출하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0.8	1.5	0.0	2.3	0.6	4.0	3.3	-1.3(-0.3)
갱신	내수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9	1.0	0.0	3.8	1.3	3.2	3.1	0.7(-0.3)
	수출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2.8	2.0	0.0	0.5	-0.1	4.9	3.6	-3.4(-0.4)
	서비스업 생산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2.8	3.7	3.6	2.1	3.0	3.6	2.6	-0.3( 2.1)
소비	소비재 판매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4.6	6.2	3.6	2.5	4.3	4.9	1.9	1.6(-0.9)
투자	설비투자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7.1	0.8	-4.9	5.9	-1.3	2.5	18.1	19.5( 1.8)
물가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1.1	0.9	0.9	1.5	1.0	0.7	2.0	1.9(-0.1)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7년 6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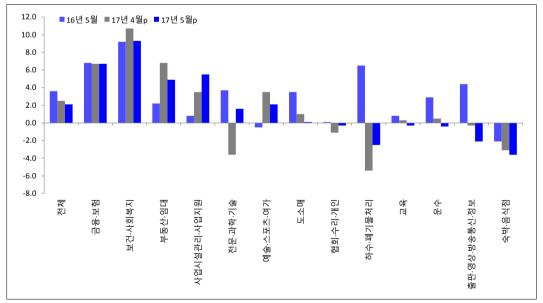


주: 2017년 4월, 5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7. 7), 『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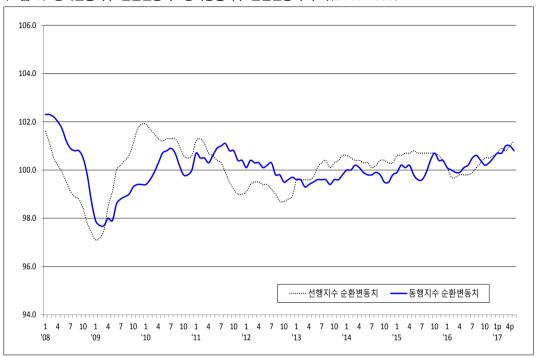
##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 고용 동향

## ◈ 여성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6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9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7천 명(1.3%)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161천 명(1.0%))에 비해 여성(205천 명(1.8%))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6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를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더 많았음.
- 2017년 6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6%)은 0.1%p, 여성(53.4%)은 0.5%p 상승해 남녀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6월 중 취업자는 26,8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1천 명(1.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30천 명, 여성은 171천 명 증가함(그림 1 왼쪽 참조).
- 2017년 6월 중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4%p 증가한 51.5%를 기록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71.7%를 기록함.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한 67.0%를 기록함(그림 1 오른쪽 참조).
- 2017년 6월 중 실업자는 1,0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전년동월(10.3%)에 비해 0.2%p 증가함(그림 2 왼쪽).
- 2017년 6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 명(-0.2%) 감소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2016년 하반기까지 감소폭이 빠르게 둔화되다 2017 년 3월 이후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6월 156천 명 감소해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육아·가사'의 사유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6년 6월 대비 80천 명 감소함.
  -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취업준비'인 경우는 2016년 6월 대비 115천 명 증가해 증가 폭이 커짐(그림 2 오른쪽).
  -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 22천 명 증가함.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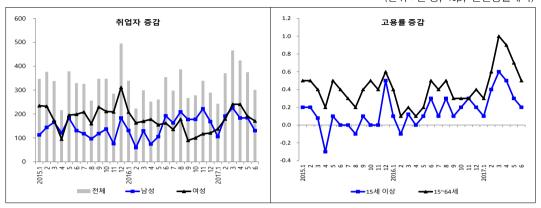
	(211-20, %, 22 11-1, 2262 11-1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4	2013	2010	6월	6월	4월	5월	6월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02	43,025	43,421	43,697	43,735	43,764	
	(증가율)	(1.0)	(1.2)	(0.9)	(1.3)	(0.9)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66	27,255	27,563	27,751	27,828	27,929	
	(증가율)	(2.6)	(1.4)	(1.3)	(1.6)	(1.1)	(1.9)	(1.4)	(1.3)	
	취업자	25,599	25,936	26,241	26,205	26,559	26,577	26,824	26,860	
	(증가율)	(2.1)	(1.3)	(1.2)	(1.3)	(1.4)	(1.6)	(1.4)	(1.1)	
	증가수	533	337	300	329	354	424	375	301	
	남성	(266)	(132)	(149)	(131)	(192)	(183)	(184)	(130)	
	여성	(267)	(205)	(151)	(199)	(162)	(241)	(191)	(171)	
	참가율	62.4	62.5	62.8	63.3	63.5	63.5	63.6	63.8	
15세 이상	남성	(74.0)	(73.8)	(73.9)	(74.4)	(74.5)	(74.4)	(74.5)	(74.6)	
-10	여성	(51.3)	(51.8)	(52.1)	(52.7)	(52.9)	(53.0)	(53.1)	(53.4)	
	고용률	60.2	60.3	60.5	60.9	61.2	60.8	61.3	61.4	
	남성	(71.3)	(71.1)	(71.1)	(71.5)	(71.7)	(71.2)	(71.7)	(71.7)	
	여성	(49.5)	(50.0)	(50.2)	(50.7)	(51.1)	(50.9)	(51.3)	(51.5)	
	실업자	937	976	1,025	1,050	1,004	1,174	1,003	1,069	
	실업률	3.5	3.6	3.8	3.9	3.6	4.2	3.6	3.8	
	남성	(3.6)	(3.7)	(3.9)	(3.9)	(3.8)	(4.4)	(3.7)	(4.0)	
	여성	(3.5)	(3.6)	(3.6)	(3.7)	(3.4)	(4.1)	(3.4)	(3.7)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36	15,770	15,859	15,947	15,907	15,834	
	(증가율)	(-1.5)	(0.8)	(0.4)	(0.7)	(0.6)	(1.1)	(0.2)	(0.2)	
	참가율	67.8	68.3	68.7	68.8	69.2	69.7	69.6	69.8	
	남성	(78.6)	(78.6)	(78.9)	(79.0)	(79.4)	(79.8)	(79.7)	(79.8)	
15~	여성	(57.0)	(57.9)	(58.4)	(58.5)	(58.8)	(59.4)	(59.3)	(59.6)	
64세	고용률	65.3	65.8	66.0	66.0	66.5	66.6	67.0	67.0	
	남성	(75.7)	(75.7)	(75.8)	(75.8)	(76.2)	(76.2)	(76.7)	(76.6)	
	여성	(54.9)	(55.7)	(56.2)	(56.2)	(56.6)	(56.8)	(57.1)	(57.3)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star$  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star$  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 구)\*100

자료: 통계청(2017.7), 『2017년 6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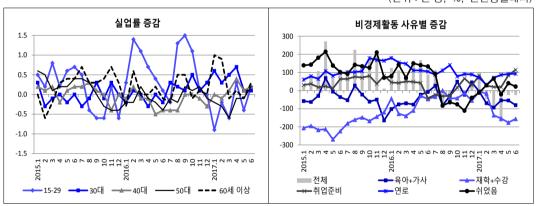
(단위:천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주: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KOSIS.

## ◈ 50대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 2017년 6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61천 명, 6.4%), 50~59세(115천 명, 1.9%), 25~29세 (10천 명, 0.4%)에서 증가한 반면, 20대 초반과 30~40대는 소폭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 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 2017년 들어 25~29세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세의 감소 영향으로20대 취업자는 57천 명 감소함.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0대는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천명,%,전년대비,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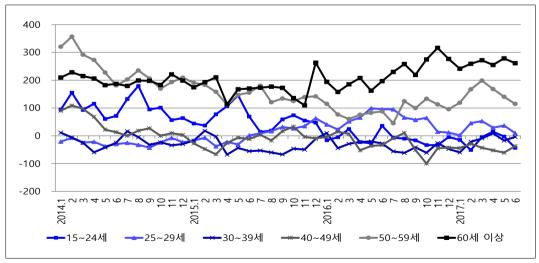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4	2015	2010	6월	6월	4월	5월	6월
전 체	25,599	25,936	26,235	26,205	26,559	26,577	26,824	26,860
	( 2.1)	( 1.3)	( 1.2)	( 1.3)	( 1.4)	( 1.6)	( 1.4)	( 1.1)
15~19세	244 ( 9.1)	245 ( 0.1)	240 (-2.0)	233 (-0.7)	233 ( 0.0)	264 (17.4)	273.9 (19.2)	256 (10.1)
20~29세	3,625	3,693	3,746	3,702	3,833	3,725	3,796	3,776
	( 1.6)	( 1.9)	( 1.4)	( 2.0)	( 3.5)	( 0.1)	(-0.3)	(-1.5)
20~24세	1,359	1,422	1,417	1,428	1,464	1,375	1408	1,397
	( 6.4)	( 4.6)	(-0.3)	( 5.2)	( 2.5)	(-1.7)	(-3.2)	(-4.6)
25~29세	2,266 (-1.1)	2,272 ( 0.2)	2,329 ( 2.5)	2,274 ( 0.1)	2,369 ( 4.2)	2,350 ( 1.3)	2,388 ( 1.6)	2,379 ( 0.4)
30∼39세	5,714	5,676	5,640	5,681	5,653	5,629	5635.8	5,649
	(-0.4)	(-0.7)	(-0.6)	(-1.0)	(-0.5)	( 0.2)	(-0.3)	(-0.1)
40~49세	6,682	6,668	6,640	6,698	6,664	6,580	6,589	6,627
	( 0.6)	(-0.2)	(-0.4)	(-0.2)	(-0.5)	(-0.8)	(-0.9)	(-0.6)
50~59세	5,845	5,994	6,086	6,037	6,125	6,227	6251.8	6,240
	( 4.3)	( 2.5)	( 1.5)	( 2.6)	( 1.5)	( 2.8)	( 2.3)	( 1.9)
60세 이상	3,489	3,661	3,884	3,854	4,051	4,152	4,278	4,312
	( 6.1)	( 4.9)	( 6.1)	( 4.6)	( 5.1)	( 6.5)	( 7.0)	( 6.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7.7), 『2017년 6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6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0,0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8천 명(1.3%)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0.6%) 증가해 증가폭 둔화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7년 6월 316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한 한 편, 일용근로자는 59천 명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감(그림 4 왼쪽).
  - 반면 임시근로자는 2016년 6월 대비 116천 명 감소해 임금근로자 증가폭 둔화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대비 48천 명 증가해 증가 폭 둔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천 명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섬 (그림 4 오른쪽).

####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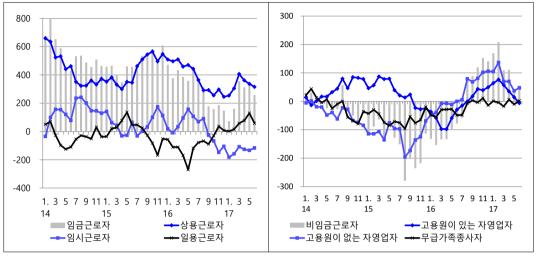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6월	6월	4월	5월	6월
전 체	25,599	25,936	26,235	26,205	26,559	26,577	26,824	26,860
면세	( 2.1)	(1.3)	(1.2)	(1.3)	( 1.4)	( 1.6)	( 1.4)	(1.1)
비임금근로자	6,857	6,706	6,689	6,889	6,811	6,798	6,848	6,854
りロロに土へ	(-0.2)	(-2.2)	(-0.3)	(-1.8)	(-1.1)	( 1.7)	( 0.6)	( 0.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1,581	1,561	1,603	1,574	1,566	1,581	1,567
포이션에 쓰는 사이터서	( 2.7)	( 2.0)	(-1.3)	( 2.5)	(-1.8)	( 2.3)	( 0.9)	(-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3,982	4,009	4,066	4,066	4,090	4,102	4,114
포이션이 따른 사이비시	(-0.9)	(-2.9)	( 0.7)	(-2.3)	( 0.0)	( 1.7)	( 0.9)	(1.2)
무급가족종사자	1,205	1,144	1,119	1,220	1,171	1,142	1,165	1,173
THATOMM	(-1.3)	(-5.1)	(-2.2)	(-5.5)	(-4.0)	( 0.6)	(-0.9)	( 0.2)
임금근로자	18,743	19,230	19,546	19,316	19,749	19,779	19,977	20,007
ロロしエハ	( 3.0)	( 2.6)	( 1.6)	( 2.4)	( 2.2)	( 1.6)	( 1.7)	(1.3)
상용근로자	12,156	12,588	12,974	12,558	13,000	13,268	13,324	13,316
80011	( 3.8)	(3.6)	( 3.1)	( 2.8)	(3.5)	( 2.8)	(2.6)	( 2.4)
임시근로자	5,032	5,086	5,104	5,123	5,230	4,986	5,082	5,114
ロハしエハ	( 2.9)	(1.1)	( 0.4)	(1.3)	( 2.1)	(-2.5)	(-2.6)	(-2.2)
일용근로자	1,555	1,556	1,469	1,635	1,518	1,526	1,571	1,577
2001年7月	(-2.2)	( 0.1)	(-5.6)	( 2.9)	(-7.2)	(5.3)	( 9.0)	( 3.9)
1~17시간	1,177	1,222	1,273	1,181	1,254	1,347	1,317	1,262
11시간	( 0.4)	( 3.8)	( 4.2)	(1.1)	(6.2)	(5.6)	( 7.7)	( 0.6)
18~35시간	2,792	2,776	3,206	2,438	2,509	2,707	2,597	2,668
1030/12	(-21.2)	(-0.6)	(15.5)	( 9.9)	( 2.9)	(-53.1)	( 3.6)	(6.3)
36시간 이상	21,220	21,535	21,346	22,217	22,449	22,234	22,615	22,618
30시간 이경	( 6.4)	( 1.5)	(-0.9)	( 0.1)	( 1.0)	(18.2)	( 0.9)	(8.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4.1	43.8	43.3	43.5	43.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7.7), 『2017년 6월 고용동향』.

####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7년 6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4.4%) 증가하였 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6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9천 명(0.8%) 증가하였음.
  -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8천 명(0.7%)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함.

## ◆ 건설업 취업자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 증가로 반전

- 11개월간 지속되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추세가 멈추고 2017년 6월 16천 명 증가로 반전한 가 운데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가 지속됨.
  - 2017년 6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6월 전년동월대비 149천 명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유지함.
  - 또한 건설업 증가와 연관이 깊은 부동산업에서 2016년 6월 대비 61천 명 증가하였고, 교 육서비스업의 안정적 증가추세도 꾸준히 이어져 85천 명 증가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서 2016년 6월 대비 38천 명 감소하였고 도소매업은 8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자영업 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줌(그림 5 참조).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전년대비,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6월	6월	4월	5월	6월
전 산 업	25,599	25,936	26,235	26,205	26,559	26,577	26,824	26,860
	( 2.1)	( 1.3)	( 1.2)	( 1.3)	( 1.4)	( 1.6)	( 1.4)	( 1.1)
농림어업	1,452	1,345	1,286	1,552	1,454	1,355	1,438	1,475
01 11	(-4.5)	(-7.4)	(-4.4)	(-7.3)	( 6.3)	(-1.0)	( 0.2)	( 1.5)
광업	13	14	19	14	19	21	23	23
	(-15.8)	( 2.3)	(38.2)	(-3.4)	(33.3)	(15.3)	(24.2)	(23.4)
제조업	4,330	4,486	4,481	4,478	4,493	4,441	4,489	4,509
	( 3.5)	( 3.6)	(-0.1)	( 3.1)	( 0.3)	(-1.4)	(-0.6)	( 0.4)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83	93	( 2.0)	(10.1)	92	( 7.0)	88	87
	(-8.3) 87	(12.2) 88	(-3.9) 96	(10.1) 86	( 3.5) 95	(-7.0) 101	(-3.4) 99	(-4.9) 103
하수, 원료재생·복원	(20.1)	( 0.9)	( 9.0)	(-4.4)	(10.5)	( 3.1)	( 2.8)	( 7.4)
	1,796	1,823	1,845	1,870	1,847	1,961	2,002	1,996
건설업	( 2.4)	( 1.5)	( 1.2)	( 1.6)	(-1.3)	( 8.9)	( 8.8)	( 8.1)
	3,792	3,783	3,729	3,776	3,722	3,773	3,744	3,730
도매 및 소매업	( 3.6)	(-0.2)	(-1.4)	( 1.2)	(-1.4)	( 2.1)	( 1.4)	( 0.2)
0.141	1,407	1,409	1,412	1,405	1,405	1,396	1,380	1,377
운수업	(-0.5)	( 0.2)	( 0.2)	( 0.0)	( 0.0)	(-2.0)	(-3.1)	(-2.0)
A.U. E. C.U.T.O.	2,098	2,179	2,277	2,169	2,301	2,266	2,296	2,263
숙박 및 음식점업	(6.4)	(3.9)	(4.5)	(4.7)	(6.1)	(1.5)	( 1.5)	(-1.7)
호교 여자 비스트리트	714	772	786	780	790	786	784	787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 3.1)	( 8.1)	( 1.8)	( 6.1)	(1.2)	( 4.1)	( 1.6)	(-0.4)
금융 및 보험업	837	789	797	786	795	770	768	771
급명 및 포임집	(-3.0)	(-5.8)	( 0.9)	(-6.8)	(1.2)	(-1.1)	(-2.6)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535	570	548	577	626	621	638
TOUT 첫 마네티	( 4.6)	(5.3)	( 6.7)	(10.5)	(5.3)	(16.2)	(10.3)	(10.6)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1,025	1,048	1,102	1,042	1,125	1,097	1,101	1,094
CC 44 72/14-	( 0.3)	( 2.3)	(5.2)	( 2.6)	( 8.0)	( 0.4)	(-0.7)	(-2.8)
사업서비스	1,180	1,249	1,293	1,268	1,291	1,264	1,308	1,303
10 1 1—	( 0.6)	( 5.8)	( 3.5)	( 7.5)	( 1.9)	(-2.4)	( 0.1)	( 0.9)
공공행정 등	957	936	993	964	1,035	1,032	1,057	1,060
	(-0.8)	(-2.2)	( 6.1)	(-0.6)	( 7.5)	( 1.6)	( 2.4)	( 2.4)
교육서비스업	1,807	1,818	1,846	1,808	1,853	1,927	1,931	1,938
	( 3.4)	( 0.6)	( 1.5)	(-0.4)	( 2.5)	( 4.8)	( 4.3)	(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1,770	1,851	1,782	1,876	1,912	1,929	1,929
	( 8.9) 394	( 4.5) 424	( 4.6)	( 2.4) 427	(5.3)	( 3.6)	( 2.7)	( 2.8) 430
예술・스포츠・ 여가	( 0.4)	( 7.8)	406 (-4.3)	(11.7)	417 (-2.2)	415 ( 6.8)	419 ( 3.0)	( 2.9)
	1,299	1,277	1,272	1,262	1,278	1,269	1,270	1,280
협회·단체·수리·기타	(-1.0)	(-1.7)	(-0.4)	(-3.6)	( 1.2)	(-1.4)	(-1.0)	( 0.2)
	116	82	69	81	77	70	69	57
가구내 및 자가	(-32.5)	(-29.0)	(-15.6)	(-32,1)	(-4.4)	( 0.6)	(-2.1)	(-26.3)
	14	18	16	19	17	11	11	12
국제 및 외국기관	(91.9)	(29.6)	(-11.4)	(26.8)	(-10.1)	(-42,9)	(-41.1)	(-30.0)
	(31.6)	(2010)	,	(_0,0,	, , , , , ,	, 1210)	, ,,,,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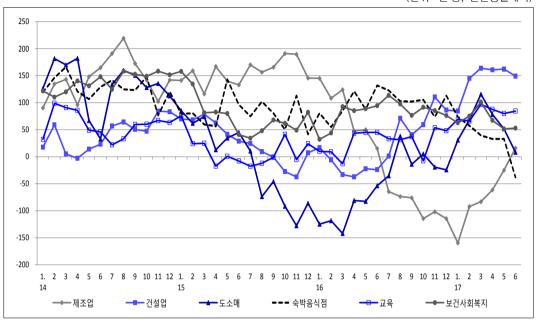
주:1)()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sup>2) 2009</sup>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17.7), 『2017년 6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7년 4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2017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46천 원(3.5% ↑)임.
  - 2017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3,521천 원이었으며, 비상 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한 1,524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초과급여증가폭 둔화(6.0%→0.0%)의 영향이 컸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4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함.
  - 2017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2015 = 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의 변화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에 그침.
  - 2016년 4월 1.0%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4월 1.9%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임 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 2017년 1~4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2.7%,0.7%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9% → 2.3%)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초과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표 1〉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 %. 2015=100.0)

							( - 11 - 1	<u> </u>	710 100.07
								20	17
		2013	2014	2015	2016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체 근	로자	3,111	3,190	3,300	3,425	3,458	3,234	3,553	3,346
임금총약	4	( 3.9)	( 2.5)	( 3.5)	( 3.8)	( 4.9)	( 3.6)	( 2.7)	( 3.5)
	ᅁᄀᅕᅃ	3,299	3,378	3,490	3,623	3,651	3,416	3,737	3,521
	임금총액	( 3.8)	( 2.4)	( 3.3)	( 3.8)	( 4.9)	( 3.4)	( 2.3)	( 3.1)
	저애그어	2,578	2,660	2,749	2,838	2,820	2,801	2,907	2,896
상용	정액급여	( 4.4)	( 3.2)	( 3.3)	( 3.3)	( 3.8)	( 3.4)	( 3.1)	( 3.4)
근로자	초과급여	184	201	216	225	220	229	221	229
	조파티어	( 1.7)	( 9.3)	( 7.4)	( 3.8)	( 5.0)	( 6.0)	( 0.5)	( 0.0)
	트버그어	537	516	525	560	611	386	608	396
	특별급여	( 1.8)	(-3.7)	( 1.6)	( 6.7)	(10.2)	( 2.0)	(-0.5)	( 2.5)
임시・일	실용근로자	1,377	1,387	1,424	1,469	1,440	1,443	1,521	1,524
임금총약	4	( 6.5)	( 0.7)	( 2.7)	( 3.1)	( 1.9)	( 1.3)	( 5.6)	( 5.7)
소비자들	ᄀᄓᅱᄉ	107.8	109	109.8	101.6	100.6	100.8	102.7	102.7
고미시달	シバハナ	( 1.2)	( 1.3)	( 0.7)	( 1.0)	( 0.9)	( 1.0)	( 2.0)	( 1.9)
실질임금	금증가율	2.5	1.2	2.7	2.8	4.0	2.6	0.7	1.5

주: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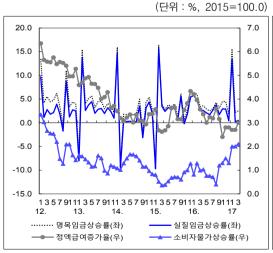
3)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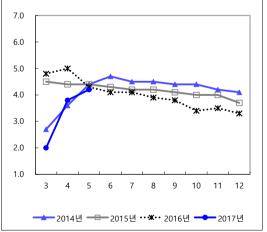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월)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 2017년 5월 협약임금 인상률 4.2%

- 2017년 5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전년동월(4.3%) 상승률보다 저조함.
  - 2017년 5월 현재 임금결정진도율은 10.4%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 2017년 4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4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7%, 1.7%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3,06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정액급여증가율의 확대(1.2%p↑)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55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지만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중소규모 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조선업 등 제조업 경기부진으로 대규모 사업체에서 초과급여가 감소하고 특별급여 상승이 둔화된데 기인함.

####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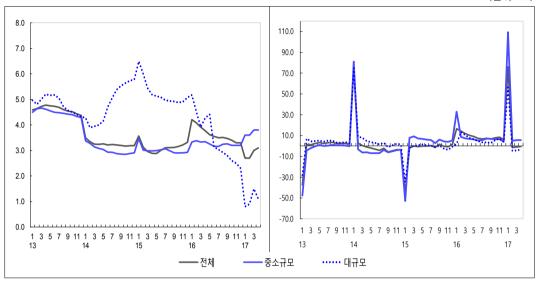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5	2010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소 계	2,938 ( 3.6)	3,048 ( 3.7)	3,027 ( 3.9)	2,922 ( 3.7)	3,165 ( 4.5)	3,060 ( 4.7)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200 ( 3.9)	3,089 ( 3.5)	3,332 ( 4.1)	3,221 ( 4.3)	
중소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641 ( 3.2)	2,633 ( 3.0)	2,745 ( 3.9)	2,744 ( 4.2)	
규모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191 ( 8.2)	200 ( 9.7)	198 ( 4.0)	206 ( 3.3)	
	특별급여	349 (5.3)	371 ( 6.1)	368 ( 6.7)	256 ( 4.1)	389 ( 5.6)	271 ( 5.9)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448 ( 2.4)	1,470 ( 2.4)	1,531 ( 5.8)	1,550 ( 5.5)	
	소 계	4,849 ( 3.7)	4,959 ( 2.3)	5,205 ( 4.2)	4,479 ( 0.5)	5,199 (-0.1)	4,554 ( 1.7)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367 ( 4.2)	4,656 ( 0.7)	5,355 (-0.2)	4,726 ( 1.5)	
대규모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499 ( 3.7)	3,436 ( 2.9)	3,558 ( 1.7)	3,507 ( 2.0)	
네ㅠエ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3 (-4.6)	341 (-4.6)	314 (-5.7)	322 (-5.6)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534 ( 7.8)	878 (-5.3)	1,483 (-3.3)	897 ( 2.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60 (-2.7)	1,225 (-6.8)	1,418 ( 4.3)	1,316 ( 7.4)	

주: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그림 3] 1~4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주: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4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

- 2017년 4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운수업(7.3%, 3,220천 원)이었음.
  - 이외에도 여가관련 서비스업(6.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2%), 숙박 및 음식점업(6.0%)에서 전산업 평균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6%대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0.1%), 부동산업 및 임대업(0.5%)은 0%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 2017년 1~4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했으나 증가폭 둔화
- 2017년 1~4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6.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5.7%), 도매 및 소매업(5.2%)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3%)은 가장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2.0%)도 전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 %)

	2015	2016			20	17
	2015	2016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 산 업	3,300 (3.5)	3,425 (3.8)	3,458 (4.9)	3,234 (3.6)	3,553 (2.7)	3,346 (3.5)
광업	3,676 (5.6)	3,796 (3.3)	3,636 (4.4)	3,266 (1.6)	3,722 (2.4)	3,421 (4.7)
제조업	3,617 (3.2)	3,755 (3.8)	3,866 (5.6)	3,501 (4.0)	3,944 (2.0)	3,623 (3.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5,851 (6.3)	4,854 (4.6)	5,868 (0.3)	4,860 (0.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20 (5.4)	2,948 (5.7)	3,142 (4.1)	3,054 (3.6)
건설업	2,591 (3.8)	2,673 (3.2)	2,727 (4.4)	2,636 (4.3)	2,805 (2.9)	2,706 (2.7)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448 (5.5)	3,311 (4.4)	3,626 (5.2)	3,438 (3.8)
운수업	2,952 (5.3)	3,102 (5.1)	3,039 (6.2)	3,000 (3.2)	3,164 (4.1)	3,220 (7.3)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5 (2.3)	1,851 (2.4)	1,985 (6.4)	1,963 (6.0)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202 (4.7)	4,044 (3.3)	4,336 (3.2)	4,139 (2.4)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914 (4.7)	5,223 (4.0)	6,153 (4.0)	5,398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74 (4.6)	2,553 (4.3)	2,634 (2.3)	2,565 (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54 (7.8)	4,524 (5.0)	4,833 (3.8)	4,624 (2.2)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29 (2.7)	1,981 (0.0)	2,089 (3.0)	2,041 (3.0)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39 (2.4)	3,239 (3.5)	3,742 (2.8)	3,329 (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41 (2.4)	2,747 (0.1)	2,905 (2.2)	2,891 (5.3)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73 (6.8)	2,462 (4.9)	2,720 (5.7)	2,621 (6.4)
협회 •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12 (7.8)	2,310 (4.5)	2,539 (5.2)	2,453 (6.2)

주: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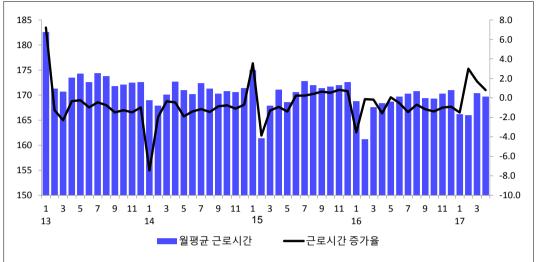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 ◆ 2017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167.5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0일로 전년동월대비 0.3일 감소)
- 2017년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3.2시간 감소한 167.5시간임.
  -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0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함.
- ◆ 2017년 1~4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증가한 169.7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3일로 전년동월대비 0.3일 증가)
- 2017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4.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1.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9%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4월 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 ◆ 2017년 4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1.1% 감소(사업체 규모별 1~4월 평균 근로시간 은 근로일수 증가 등으로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증가)
- 4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8.3시간(-2.0%), 대규모 사업체는 164.2시 간(-1.1%)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한 12.4시간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79.7시간으로 나타남.

####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5	2016			20	17
		2015	2010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체 근로시간	173.2 ( 0.7)	172.0 ( -0.7)	169.1 ( -1.4)	171.8 (-5.2)	170.3 ( 0.7)	168.3 ( -2.0)
<b>-</b> .	상용 총근로시간	179.6 ( 0.7)	178.6 ( -0.6)	175.0 ( -1.5)	178.2 (-5.7)	176.2 ( 0.7)	174.3 ( -2.2)
중소 규모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 ( 0.8)	166.1 ( -0.8)	162.9 ( -1.7)	165.5 (-6.3)	164.4 ( 0.9)	162.0 ( -2.1)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 ( 0.0)	12.4 ( 1.6)	12.0 ( 0.8)	12.7 ( 4.1)	11.8 ( -1.7)	12.3 ( -3.1)
	비상용근로시간	117.5 (-1.5)	115.7 ( -1.5)	114.8 ( -1.5)	115.9 (-1.1)	113.1 ( -1.5)	112.0 ( -3.4)
	전체 근로시간	169.7 ( 0.5)	166.9 ( -1.6)	165.6 ( -2.2)	166.1 (-6.9)	166.9 ( 0.8)	164.2 ( -1.1)
	상용 총근로시간	173.7 ( 0.9)	170.8 ( -1.7)	168.8 ( -2.2)	171.0 (-6.9)	169.8 ( 0.6)	168.7 ( -1.3)
대규모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 ( 1.1)	157.0 ( -0.8)	154.6 ( -1.3)	156.5 (-6.6)	157.6 ( 1.9)	156.3 ( -0.1)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 (-1.3)	13.7 (-11.0)	14.1 (-11.3)	14.5 (-9.9)	12.1 (-14.2)	12.4 (-14.5)
	비상용근로시간	86.9 (-7.4)	85.5 ( -1.6)	90.5 ( -4.1)	74.8 (-7.5)	97.3 ( 7.5)	79.7 ( 6.6)

주: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 2017년 4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산업별 1~4월 평균 근 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3.6%, 183.5시간)이었음.
  - 이 외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 교육서비스업(-2.8%), 제조업(-2.0%) 순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가운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0.8%), 광업(0.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6%)은 월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함.
  - 4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3.5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8시간)으로 나타남.
- 1~4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3.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6%), 하수・폐기물 등(2.4%), 금융 및 보험업(2.2%) 순이었으며,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5.4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 (146.2시간)으로 나타남.

####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1).7							
	2015	2016			20	17	
	2013	2010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 산 업	172.6 ( 0.7)	171.0 (-0.9)	168.4 (-1.6)	170.7 (-5.5)	169.7 ( 0.8)	167.5 (-1.9)	
광업	179.2 (-0.1)	179.0 (-0.1)	174.4 (-1.6)	177.6 (-5.6)	180.8 ( 3.7)	179.1 ( 0.8)	
제조업	186.3 ( 0.5)	184.5 (-1.0)	181.5 (-1.8)	185.7 (-5.2)	183.0 ( 0.8)	181.9 (-2.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 0.2)	167.5 (-1.9)	165.1 (-3.4)	169.4 (-7.3)	168.1 ( 1.8)	170.9 ( 0.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 0.0)	177.1 (-0.4)	174.7 ( 0.2)	178.0 (-3.3)	178.9 ( 2.4)	179.4 ( 0.8)	
건설업	147.4 (-0.7)	145.7 (-1.2)	144.5 (-1.4)	148.0 (-3.1)	146.2 ( 1.2)	145.8 (-1.5)	
도매 및 소매업	172.9 ( 0.3)	171.4 (-0.9)	168.2 (-2.0)	169.8 (-6.9)	170.2 ( 1.2)	168.1 (-1.0)	
운수업	173.9 ( 0.5)	172.3 (-0.9)	170.1 (-1.2)	171.0 (-4.6)	169.4 (-0.4)	167.6 (-2.0)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 0.1)	172.3 (-1.7)	169.5 (-2.8)	172.1 (-4.6)	170.5 ( 0.6)	169.8 (-1.3)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164.3 ( 1.5)	163.3 (-0.6)	159.8 (-2.1)	160.4 (-8.3)	163.9 ( 2.6)	161.4 ( 0.6)	
금융 및 보험업	164.3 ( 0.6)	162.8 (-0.9)	159.9 (-2.4)	161.0 (-8.1)	163.4 ( 2.2)	159.3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8 ( 1.4)	191.2 (-0.8)	189.0 (-0.8)	190.4 (-4.3)	185.4 (-1.9)	183.5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 1.0)	163.3 (-1.0)	160.2 (-1.8)	162.2 (-7.1)	163.2 ( 1.9)	160.6 (-1.0)	
사업서비스업	173.2 ( 0.8)	171.7 (-0.9)	168.5 (-1.6)	169.0 (-6.1)	168.2 (-0.2)	165.4 (-2.1)	
교육서비스업	151.5 (-0.3)	148.5 (-2.0)	145.8 (-3.8)	145.4 (-9.4)	147.6 ( 1.2)	141.4 (-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 ( 1.1)	169.7 (-1.0)	166.8 (-1.4)	169.4 (-5.3)	166.4 (-0.2)	164.3 (-3.0)	
여가관련서비스업	160.6 ( 1.1)	159.7 (-0.6)	155.7 (-1.3)	158.4 (-5.3)	157.5 ( 1.2)	156.8 (-1.0)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 0.5)	163.6 (-0.1)	160.3 (-0.7)	161.1 (-5.7)	163.2 ( 1.8)	160.0 (-0.7)	

주: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sup>2)()</sup>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sup>3) 9</sup>차 산업분류 기준.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6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64건
  - 지난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341건)보다 23건 많은 수치임.
- 지난 6월 조정성립률 58.6%
  - 지난 6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3.1%에 비해 4.5% 낮아진 수치임.

#### 〈표 1〉2016년, 2017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처리		조정성립		2	조정불성	릨	행정	취하		조정
	건수	건수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지도	철회	진행중	성립률
2017. 6	364	293	154	72	82	109	14	95	6	24	71	58.6
2016.6	341	271	149	59	90	87	8	79	8	27	70	63.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지난 6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7,085건
  - 지난 6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7,656건)보다 571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4.0%(768건), 기각·각하·취하· 화해 비율이 86.0%(4,719/건)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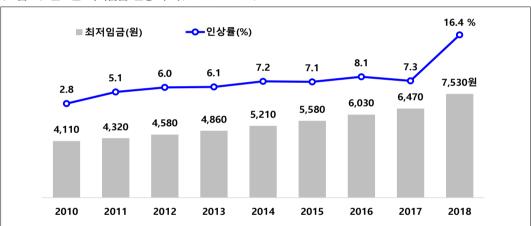
#### (표 2) 2016년, 2017년 6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처리내역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진행중
2017. 6	7,085	5,487	674	94	956	345	1,995	1,423	1,597
2017. 6	7,656	5,860	774	122	966	414	2,271	1,313	1,796

자료: 중앙노동위원회,「사건통계」.

##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대비 16.4%)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7.15(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
  -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대비 16.4%) 인 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대비 221,540원 인상된 금액임.
  -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임.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18)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 보건의료 노사, 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 줄이기에 합의
  - 보건의료노조와 50여 개 병원 사용자는 7월 12일(수) 4차 교섭에서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함. 노사는 지난달 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집중교섭을 해옴.
  - 보건의료 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함.
  - ─ 올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는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양측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 40시간제 시행과 휴가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 정원 책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와 모성보호를 위한 부족인력 충원 등의 이슈에도 큰 틀에서 합의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017년 교섭을 '일자리 교섭'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며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밝힘.

## ◈ 비정규직 파업

-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심 최대규모 파업
  -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실시함.
  -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일 파업에 6만여 명이 참여함. 초·중·고 급식실 노동자, 대학· 병원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민주노총 비정규 조합원 18만여 명 중 30% 이상이 동참했으며, 상급단체가 없는 여성노조와 공무원노조·전교조 정규직들도 가세함.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7일 경고파업 돌입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올해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실시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9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
  - 지부는 교섭에서 통상급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함. 현재 설치·수리기사 임금은 실적급과 고정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수준은 기본급 138만 원에 실적급을 포함해 평균 207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지부는 LG유플러스가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인근 협력업체에 일 감을 내어 주도록 강제한 '협력업체 돌려막기'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함. 지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은 스스로 사용자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협력업체 외주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사용자 측은 업무를 다른 협력업체에 이관했을 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 박함.
- 만도헬라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 파업과 갈등
  - 만도헬라의 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5월

부터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파업에 동참하는 순화파업을 이어옴.

- 사측은 관리직과 직접 채용한 단기계약직을 현장에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함.
- 지회는 하루에 수차례 20~30분씩 쟁의행위를 이어감
- 사측은 하청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7월 10일부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공 장 출입을 금지함.
-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 고용조정과 노사갈등

-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지속
  - 고용노동부가 7월 2일 발표한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 1년 새 조선업종 노동자가 19만 7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6만 7천여 명 감소함.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2 만 71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실직함. 7월 13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500여 명은 1박 2일 상경투쟁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편법적 경영승계 중단 등을 촉구함.
  -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해고노동자 2명의 고공농성은 100일째를 맞음(7월 19일 기 준). 이들은 재직하던 업체의 폐업준비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다른 하청업체 취업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를 경험한 후, 원청이 일명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지 회 간부 재취업을 막는 방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 임금반납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2018년 까지 약 5천 명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음. 당분간 노동자혐의회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임.
  - 한편 7월 16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 3천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2조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엄격한 관 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 글로벌 지엠, 한국시장 철수설 확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생산량은 완성차와 반조립제품을 합쳐 2012년 20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124만 9천 대를 기록함.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8시간+9.33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주간연 속 2교대제를 '8시간+8시간'으로 개정, 월급제 시행, 공장별 생산물량과 차종 약속 등을 요구함.

- 지부 관계자는 "공장별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등 미래발전계획만 나온다면 파업을 자제 하고 월급제 시행 같은 요구안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지엠 경영진은 지난달 30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글로벌 지엠은 현재 수익성과 사업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물량과 제품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으로 회사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노조의 물량 관련요구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약할 수 없다"고 밝힘.
- 지엠 본사가 한국공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 것을 두고 당장 철수하기보다
  는 차츰 물량을 줄여 한국공장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관측과 공장가동을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각종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 씨티은행 지점 90개 폐점 확정

- 씨티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를 점포 폐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 온 바 있음.
- 지부는 "영업점 대다수 유지"를 요구안으로 걸고 교섭에 나선 바 있음. 법원은 두 번에 걸쳐 지부가 은행의 대규모 영업점 폐쇄 계획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영업점 통합은 은행의 경영상 권한"이라고 판시함.
- 7월 11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은행과 전체 126개 중 101개였던 폐점 지점을 90개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음. 지부는 "제주 등 점포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과 고객거 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11개 영업점의 폐점 계획을 은행이 철회했다"고 설명함.

## ◈ 관광통역안내사 노조 설립 증가

-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관광통역안내사본부 설립
  - 관광가이드로 불리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이어지고 있음.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대형여행사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처우개선 등임.
  -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는 지난 11일, "대형여행사 횡포에 고통 받는 관광통역안내 노동자 2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힘.
  - 노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이 6월 30일, 한국관광통역안 내사본부(본부장 박인규) 설립총회를 연 데 이어 7월 7일, 노조 가입인준을 마침.
  - 현재 본부가 가입 대상으로 삼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동남아시아 15개국 1만 명 수준임.
- 공정거래위, 대형여행사 갑질 횡포 조사해야

- 노조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관광통역안내사들이 국내 H투어・M투어 같 은 대형여행사의 횡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노조에 따르면, 관광객은 대형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상품을 계약하지만 실제 여행을 안내하는 곳은 교포들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임. 관광통역안내사는 현지여행사에서 일하지만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음.
- 노조는 대형여행사가 판매하는 단체여행 상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함. 현지 여행사는 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옵션관광ㆍ쇼핑을 통해 메우도 록 하고 있음. 노조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이를 메우지 못하면 며칠을 고생해도 한 푼도 벌지 못하거나 거꾸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 2017년 3월 전국관광통역안내사노조 설립

- 지난 3월에는 서비스연맹 전국관광통역안내사노조(위원장 문경숙)가 고용노동부에서 노 조 설립신고증을 받음.
-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노조는 중국여행상품을 다뤄온 관광통역안내사 10여명으로 구성 됨. 노조는 사드 사태로 중국관광객이 축소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이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고 밝힘.
-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불안과 부당처우를 개선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자유업종으로 보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대정부 투쟁

-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강력 반발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 단을 의결함.
  - 15일, 한수원노조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집회를 열고 "한수원 이사진이 과거 정부에서 는 원전이 필수라더니 정부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힘.
  - 17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원전 영구 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 을 밝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 발표에 따라 논란이 확대됨.
  - 탈핵단체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의 원전 건설 백지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원전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 고용부. '사회적 가치 지표' 공표

-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SVI)」로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은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7일, 새로 개발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공표함.
  -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 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14개 세부 측정지표(계량 11개+비계량 3개)로 구성
  - 그간 기업의 성과는 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면, 이번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측정 토록 개발됨.
  - 이번 지표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보완・발전시켜야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에 투자, 재정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 우선, 성장기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모태편드 투자대상 선정, 크라우드 펀딩대회 심사기준 등에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임.
  -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쉽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KIT)'도 개발하여 오픈함.
  -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 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7.17(월)부터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등 107개소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등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7.17(월)부터 실시함.
  - 이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 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 기 위한 것임.
  -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임.

-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고용부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 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